

장애인권리보장법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이 법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·정신적 특성 등과 사회의 문화적·물리적·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함(안 제3조).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법제·재정적 조치, 사회의 환경적 요인 개선, 차별 방지 및 권리옹호·구제 체계 구축,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장애인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,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(안 제8조).
-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, 평등권, 자기결정권,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함(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).

-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, 직업선택권, 안전권, 건강권, 재활을 받을 권리,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을 규정함(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).
-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, 지식 및 정보접근권,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, 체육활동에 관한 권리, 관광·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, 사법 접근권을 규정함(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).
-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장애인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함(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).
- 3년 주기의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 실시,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통계 수집·관리, 장애영향평가 근거 마련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함(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).
-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·개편함(안 제38조).
- 장애아동, 장애노인, 장애여성, 중증·중복·소수유형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, 홍보영상 및 디지털 기술 활용 등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).
-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개발, 장애인 관련 단체의 보호·육성,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).

II. 검토의견

- 현행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,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, 장애인정책임관, 한국장애인개발원, 장애실태조사 등을 제정안에 규정하고, 제정안의 부칙에서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¹⁾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임.
- 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박 혜 진)

1) 장애인권리보장법안(대안) 부칙

- 제2조(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- 제3조(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라 수립·시행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·시행된 것으로 본다.
-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
-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본다.
-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·조정으로 본다.
- 제4조(장애인정책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.
- 제5조(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본다.
- ②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며, 그 권리·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은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명의로 본다.
- ③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,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.
- ④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